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297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명인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박형삼

변 론 종 결 2021. 4. 9.

판 결 선 고 2021. 5.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소외 I 사이의 별지1. 주식매매계약표 기재의 각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은 별지2. 취소주식표에 기재된 각 주식수의 한도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B, D, E, F, G는 원고에게 별지3. 금액표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C, H은 소외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과 K을 상대로 88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1. 2. ‘I은 K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6880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I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2. 8. 24. ‘I은 원고에게 4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3.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99223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I은 2016. 11. 23.부터 2017. 10. 31.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년 말경 소외 회사 발행주식 1,523,008주(총 발행주식의 74.5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7. 4. 3. 피고들에게 위 주식 중 1,438,17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2. 15. I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61,085,480원을 변제받은 외에는 I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3. I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불2074)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I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I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별지2. 취소주식표에 기재된 각 주식수의 한도에서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 H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I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피고 B, D, E, F, G는 원고에게 별지3. 금액표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I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가 소외 회사에 흡수합병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외부로부터 투자유치 및 자금유통을 추진하던 중,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2016. 12. 20.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027,46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미리 양도받으면서, 만약 I이 2017. 3. 20.까지 위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I은 위 2017. 3. 20.까지 피고들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들은 위 각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I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는바, I이 2017. 4.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원고에게 I에 대한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I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매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여 매도인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하여 매도인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76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2016. 10. 6. I이 대표이사인 L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고, I은 합병기일인 2016. 11. 2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② I은 2016. 12. 20. 피고들로부터, 별지1 주식매매계약표 기재의 각 주식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총 1,027,460,000원에 매수하여 양도받았고, 그 매매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만약 I이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I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들은 I이 위 2017. 3. 2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7. 4. 3. I과 사이에, 위 각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I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앞서 I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6. 12. 20.자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주식을 반환한 것으로 기존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주식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I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I과 피고들 사이의 2017. 4. 3.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I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종전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종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주식의 반환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편을 제2,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2. 20.경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따라서 I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원, 판사 배온실, 판사 구현정

별지1

주식매매계약표

매매일자	법인명	양도자	양수자	주식(단위: 주)
2017. 4. 3.	주식회사 J	I	B	535,914
			C	85
			D	127,543
			E	348,952
			F	306,536
			G	102,178
			H	16,967
			합 계	1,438,175

별지2

취소주식표

순번	성명(폐고)	주식(단위: 주)
1	B	141,199
2	C	21
3	D	33,604
4	E	91,939
5	F	80,764
6	G	26,921
7	H	4,470

별지3

금 액 표

순번	성명(피고)	금 액(단위: 원)
1	B	136,115,836
2	D	32,394,256
3	E	88,629,196
4	F	77,856,496
5	G	25,951,978

